

# 직무발명 보상규정

## 산정기준세칙 SJ-QEP-03-07

제정 2018. 05. 08.

시행 2018. 06. 01.

제1조(목적) 이 보상세칙은 세종정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에 관하여 보상액 등 보상수준·산정기준·보상시기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보상금) 회사는 각 직무발명의 출원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원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허: 50만원
2. 실용신안: 30만원
3. 디자인: 20만원

제3조(등록보상금) ① 회사는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처분보상금) ① 회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별표에 기재된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출원유보보상금)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을 유보하거나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각 보상금의 합계액을 출원유보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상금의 증액)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금전적 보상) ①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보상금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 발명자에게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휴가 후 근로를 제공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 발명자에게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휴가 후 근로를 제공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의 경우에는 출원 건수 또는 등록건수와 관계없이 각각 매1년마다 1회만 허용된다.
- ③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한 발명자는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한 발명자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 해당 비금전적 보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비금전적 보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휴가의 경우에는 잔여 휴가일수에 발명자의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 부 칙

1. 이 보상세칙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보상세칙 시행 전에 기 등록된 직무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과거 얻은 이익까지 포함하여 적정하게 보상하되, 별표 1의 3. 보상규정 제정 전 기 등록된 발명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3. 기등록 및 예정 특허권에 다수의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별표 2의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산하여 백분율로 등급을 산정하여 발명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별표 1]

## 실시·처분보상액 산정기준

### 1. 실시보상금 산정 기준

1)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된 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보상금 = 가치평가액 × 사용자등이 얻은이익(독점권기여도) ×  
발명자공헌도 × 발명자간 기여율 × 심의위원회 조정률

■ 가치평가액은 외부의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가치평가액 기준함.

■ 사용자등이 얻은이익(독점권기여도)은 외부의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공헌도를 기준할 수 있음.

■ 발명자 공헌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구분	구간	공헌도(%)
직급기준 [A]	사원	30.0%
	대리이하	27.5%
	과장이하	25.0%
	부장이하	22.5%
	임원(대표포함)	20.0%
근속년수기준 [B]	3년이하	32.5%
	5년이하	30.0%
	7년이하	27.5%
	10년이하	25.0%
	10년이상	22.5%
직무기준 [C]	비연구소	100%
	연구소	20%

■ 발명자 공헌도 = (A + B) × C

■ 심의위원회 조정률

심의위원회는 발명의 경위와 내용,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실시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율을 결정할 수 있음.

구분	조정율(%)	비고
A. 발명의 경위와 내용	± 2%	최저: -10% 최고: +10%
B.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 2%	
C. 실시 수익의 규모	± 2%	
D. 기술 및 독창성 등	± 2%	
E. 기타 사항	± 2%	

■ 조정률 = A + B + C + D + E

2. 처분보상금 산정 기준

■ 보상금 = 처분가액 × 사용자등이 얻은이익(독점권기여도) × 발명자공헌도 × 발명자간 기여율 × 심의위원회 조정률

(이하 산정 방식은 실시 보상금 산정 방식과 동일)

3. 보상규정 제정 전 기 등록된 발명의 보상기준

1) 과거 실시 보상액

■ 보상금 = 세후 영업이익 × 사용자등이 얻은이익(독점권기여도)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간 기여율 × 심의위원회 조정률

2) 현재 보상액

■ 보상금 = 가치평가액 × 사용자등이 얻은이익(독점권기여도) × 발명자공헌도 × 발명자간 기여율 × 심의위원회 조정률

3) 보상액 결정: 1) + 2) 로 결정 함.

[별표 2] 공동발명자 평가기준

평가요소(점수)	평가기준(점수)			
발명 및 고안의 기술내용(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직책 및 노력정도(30)	직책에 의한 수동적 연구발명(15)		직책에 의한 능동적 연구발명(30)	
담당업무에 대한 공헌도(30)	기술에 대한 연구(5)	기술에 대한 연구, 개선보완(10)	기술에 대한 연구, 영업, 수주, 개선보완(20)	기술에 대한 연구, 영업, 수주, 개선보완 총괄(30)
연구기간(20)	3개월 미만(5)	3~6개월 미만(10)	6개월~1년 미만(15)	1년 이상(20)
<p>* 담당업무에 대한 공헌도  연구 : 자체적인 연구와 지시로 인한 연구로 나뉨  개선보완 : 연구로 인한 발명의 기술개선보완  영업 : 발명기술로 인한 영업  수주 : 발명기술로 인한 사업수주</p> <p>* 직책 및 노력정도  직책에 의한 수동적 연구발명 : 팀장 및 책임자의 지시에 의한 과제 및 연구  직책에 의한 능동적 연구발명 : 지시에 의하지 않고 직책구분없이 자발적 연구 및 과제  - 점수범위안에서 책임자, 심의위원회의 관리점수에 의해 구분</p> <p>* 평가점수의 합계에 따른 공동발명자간의 백분율에 의해 등급조정</p>				